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자 포함 의무화〉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68호)

2026. 2.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추천자 포함 의무화(안 제9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0.

다. 회 부 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부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III. 검토의견

1.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자 포함 의무화(안 제9조)

현행	개정안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함 ·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u>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이 경우 나목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야 함.</u>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현행법상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¹⁾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2026년 1월 기준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음.²⁾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2026년 1월 기준)]

성명	현직	주요경력	임기
계	총 14명(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 ※ 남성: 10명 / 여성: 4명		
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리 차관	-	-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	-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	-
위촉직 위원 (2년)	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기재부 재정관리관	'24.5.24~ '26.5.23
	언론인	-매일경제신문 문화부장, 국제부장	
	공공기관	-기재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복지부·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위원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변호사	-특허청 특허심사관 -지식재산위원회 소송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	
	교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교수	-금융위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부담금 운용 평가위원	
	교수	-재정사업심층평가 연구진	'24.7.8~ '26.7.7
	교수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한국감정원 내부성과평가위원	

자료 : 기획예산처

2.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전으로 부처진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기획예산처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추천한 사람 또는 동 협의체 관련 자, 기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경력을 사유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사례는 없음.

개정안은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³⁾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자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임.

첫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 여건을 실효성 있게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상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2024년도에 징수된 총 24조 2,412억 원의 부담금 중 11.1%인 2조 6,980억 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1조 2,155억 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1조 4,825억 원)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등 상당한 금액의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수입으로 편입되거나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의 핵심적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 계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금 액	177,836	29,102	12,155	14,825	8,495	242,412
(비 중)	(73.4)	(12.0)	(5.0)	(6.1)	(3.5)	(100.0)

자료 :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25.5.)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상 자체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담금은 지역 맞춤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충적 재원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상당수의 부담금은 해당 지역 내 도로·공원 등 SOC 확충이나 지역 환경 개선과 같이 용처가 특정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당 부담금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과정에서 실제 재원의 운용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3.27.)」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 필요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제출되어 폐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해당 부담금이 지역 내 교육 환경 개선의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검토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수요나 재정 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재정 악화 및 지역 내 학교 신설 차질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⁴⁵⁾

4) "교육감들 "새 학교 계속 필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반대""(한국일보, 2024.5.28.)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심의위원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지방재정에 직결되는 부담금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입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전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의 심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 간 행정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부담금 행정 전반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담금은 그 성격상 부과 대상자와 수혜 대상자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책 결정 이후에도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부담금 신설이나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초래하거나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공식적인 법정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를 심의 과정에 참여시킨다면 현행 부담금 제도의 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의를 거쳤다는

5) 참고로, 해당 부담금은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결과, 폐지하지 않고 부과범위·부과요율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존치가 결정됨(2024.12.)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을 높여 중앙-지방 간의 불필요한 행정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 전체적인 부담금 징수의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 사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림청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농촌진흥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명

2. 민간위원: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민간위원에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자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개별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하는 기구이나, 특정 이해관계 집단을 대변하는 인사가 당연직에 가깝게 포함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 및 국가 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부과 실효성이 낮거나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폐지 및 감면함으로써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3.27.)」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참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3.27.) 주요내용]

- (추진배경) 그간 부담금 정비에도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존속 중
 - 2024년 기준 부담금 91개, 24조원 규모 운용중(GDP 대비 약 1% 수준)
- (기본방향) 부과목적·원칙에 맞지 않거나, 손쉬운 자원 조달을 위해 국민·기업에 부과하던 32개 부담금을 감면·폐지(제21대 국회 기제출한 4개 별도)
 -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 건강·환경,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 정비
 - 그간 90개 내외로 유지 중이던 부담금 수를 69개로 대폭 축소

정비대상	제21대 기제출			
	폐지	감면	관리 제외	통합
32개	18개	14개	3개	1개

부처	폐지(18개) / 관리제외(3개) / 통합(1개)	감면(14개)	
금융위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관리제외)		
기재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	
외교부	▪출국납부금	▪국제교류기여금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	
문체부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관리제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출국납부금	
산업부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관리제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농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수익자부담금(댐건설법)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 2건 통합)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용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토부	▪원인자부담금(도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단지)	▪시설부담금(물류단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방제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부담금의 존폐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심의에 참여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이 되는 부담금의 정비 과정에서 공익적 타당성보다는 지역 재원 보존이라는 조직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우려가 있어 보임. 이는 결국 전국적 관점에서 일관성, 통일성이 중요한 범정부 차원의 부담금 합리화 기조와 충돌하여 규제혁파의 속도를 늦추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중립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임.

둘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 식견을 바탕으로 공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를 의미하나, 개정안과 같이 특정 단체의 추천권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원 구성의 전문성에 역행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담금 정책은 거시경제적 영향, 조세 체계와의 정합성, 산업별 국제 경쟁력 등 고도의 전문적 분석을 요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풀(Pool) 내에서의 자율적인 위촉이 아닌 특정 기관의 추천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이들이 전문가로서의 개인적 견해보다는 추천 기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심의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위원회 결정의 대외적 신뢰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에 대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과제 52-2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⁶⁾의 일환으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 일괄 정비 차원이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추가적으로, 2025년 12월 개정안 발의 당시 부담금 제도는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였으나 2026년 1월 2일자로 해당 제도는 기획예산처 소관이 되면서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문구도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9.)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中 •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개헌을 계기로 폭넓은 자치입법권 보장

현행	개정안	수정예시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2. (생략) 3.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u>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이 경우 나목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u> <u>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u>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2. (생략) 3.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이 경우 나목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u> <u>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u>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u>	3.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 명 이내의 민간위원. 이 경우 나목 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3